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766호 2020. 9. 2.(수)



선	기관의 장
결	

고 시

제2020-97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2
 제2020-99호 도로명주소 고시 3

공 고

제2020-1149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계획 5
 제2020-1151호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5
 제2020-1152호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49
 제2020-1159호 공시송달공고 52
 제2020-1161호 고제 탑선 자동염수분사장치 CCTV 설치 행정예고 53
 제2020-1164호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56

회 램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0-97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3종 시설물 지정을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6일

거 창 군 수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구)장풍교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울리 940-7번지 일원	거창군청 건설과	철거	해당 없음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9. 2.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223-1 등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223-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내당길 69-34	20090401	20200902	내당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551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오류동길 29	20090401	20200902	풍수설에 마을 터가 버들가지에 펼썩리가 등지를 짓는 유지생소 형국이라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31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옹곡1길 56-1	20091228	20200902	마을 뒷산에 웅장설이라는 명당자리가 있어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332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원봉계길 132	20090401	20200902	한말 이곳에 살면서 동학혁명 때 치안유지에 공이 있었다는 하종호의 호 봉서의 새봉자를 따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40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산길 421	20090401	20200902	중산마을로 가는 길임이 반영된 도로	부여

거창군 공고 제2020-1149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거창군수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계획

1. 개정 이유

-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뢰받는 수도행정 구현
-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구체적 지정

2. 주요내용

유형	구분	내 용	비 고
신설	소멸시효 규정 마련	○ 하수도 사용료 및 과오납금 소멸시효 규정 마련	제29조의2(소멸시효)
변경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지정	○ 50미터 내 →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내	제2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지정	○ 하수처리구역 → 하수처리구역내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	제15조
	하수도 사용료 감면 구체적 지정	○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26조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불복절차 마련	○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규정 마련	제28조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규정 명확화	○ 납부기한 경과 일수에 따른 가산금 규정 명확화	제29조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구체화	○ 조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구체화	별표 7

3. 개정 규칙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도사업소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거창군 수도사업소
- 우편번호:50126, 전화: 055-940-8418, 팩스: 055-940-8409
이메일: dudgh8241@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
----------	-------

제출일자	2020. . .
제 출 자	수도사업소장

1. 제안 이유

- 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뢰받는 수도행정 구현
- 나. 하수처리구역 및 부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행정처분 근거 마련
- 다. 행정처분에 따른 구체적 불복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군민 권리 회복
- 라. 상하수도 사용료 및 과오납금 소멸시효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처분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공공하수도로부터 50미터 내” →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안 제2조)
- 나.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로 한다. (안 제15조)
- 다. 조문정비(안 제26조)
- 라. 조문정비(안 제28조)
- 마.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규정 정비(안 제29조)
- 바. 하수도 사용료 및 과오납금 등 소멸시효 규정 마련(안 제29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15조제2항, 제65조, 지방자치법 제140조, 민법 제163조, 지방재정법 제82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 (2) 규제심사 :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8. 28. ~ 2020. 9. 21.
 - (나) 예고결과 :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의뢰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중 “50미터 내로 하여야 한다.”를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수처리구역”을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도 사용료를”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가산금)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 x 2/100 x 12 개월 x 연체일수/365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의 100분의 2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또는 원인자부담금 등: 3년
2.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또는 원인자부담금 등: 5년

별표 7의 감면대상란 라목 중 “각 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면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u>50미터 내로 하여야 한다.</u></p>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면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u>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u></p>
<p>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u>하수처리구역을</u> 대상으로 징수한다.</p> <p>②~③ (생략)</p>	<p>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u>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를</u> 대상으로 징수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6조(감면) ① 군수는 <u>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u>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6조(감면) ① 군수는 <u>공공하수도 사용료를</u>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p> <p>②(현행과 같음)</p>
<p>제28조(이의신청)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4조부터 제97조, 제199조를 준용한다.</p>	<p>제2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u></p> <p>③ <u>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u></p> <p>④ <u>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u></p> <p>⑤ <u>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9조(가산금)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u></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u><신 설></u></p>	<p><u>제29조(가산금)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u></p> <p><u>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x2/100x12개월x연체일수/365</u></p> <p><u>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의 100분의 2</u></p> <p><u>제29조의2(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1.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또는 원인자부담금 등: 3년</u></p> <p><u>2.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또는 원인자부담금 등: 5년</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별표 7(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감 면 대 상	감 면 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용 1단계 요금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1급~3급)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100퍼센트	
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 1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50퍼센트	
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20퍼센트	
사.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지역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자	1년차	30퍼센트
	2년차	20퍼센트
	3년차	10퍼센트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시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50퍼센트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별표 7(공공하수도 사용료감면기준)

감 면 대 상	감 면 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1급~3급)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100퍼센트	
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u>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u> 에서 정하는 자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50퍼센트	
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20퍼센트	
사.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지역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자	1년차	30퍼센트
	2년차	20퍼센트
	3년차	10퍼센트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시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50퍼센트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15조, 제65조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163조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2. 개정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20. 7. 2. 시행)으로 상품권의 발행·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거창군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 종이형 상품권 외 카드, 모바일 상품권 발행 근거 마련
 - 유통지역 관할구역 범위 지정 근거 마련
- 판매대행점,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제5조)
 - 판매대행점의 협약 체결 및 판매대행점 정보 공개 신설
 - 가맹점 지정에서 등록으로 변경 및 가맹점 등록취소 사실 정보 공개 신설

- 상품권 잔액의 환급 및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제7조)
 - 가맹점 환급기준 명시 및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근거 신설
- 상위법령에 충돌·중복되는 사항 정비

4.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0. 8. 28. ~ 2020. 9. 17.(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경제교통과
- 전화번호 : 055)940-3683
- FAX : 055)940-3349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례명 :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00원권
2. 10,000원권

③ 거창사랑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권면금액
2. 발행인의 명의 및 연락처
3. 발행 일련번호 및 바코드
4.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5. 사용자 이용안내
6. 그 밖에 군수가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거창사랑상품권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 ①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거창사랑상품권의 변경된 유효기간
2. 그 밖에 변경 전 거창사랑상품권의 사용 가능 기한 등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변경으로 인한 모든 사항

②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거창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의 거창사랑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매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영업소

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군과 의무휴업 협약을 체결한 영업소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거창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9조(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2. 거창사랑상품권 홍보
3. 거창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을 말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후단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 및 추석 등 연 4회 이내, 100분의 10 이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할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할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거창사랑상품권 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거창사랑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거창사랑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 및 판매대행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한 것으로 본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2] [법률 제17252호, 2020. 5. 1,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7252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통 중인 상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상품권은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가맹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2] [대통령령 제30817호, 2020. 7. 1, 제정]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판매대행점 협약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가맹점의 등록·관리에 대한 절차·서식 등을 정함(안 제3조)
 - 이용규약 및 할인제한을 정함(안 제4조)
 - 환전 청구 및 한도, 처리 등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할인판매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8조)
 - 환수사유를 정함(안 제9조)
 - 발행대장 및 회계장부를 정함(안 제11조)

4. 전부개정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0. 8. 28. ~ 2020. 9. 17.(20일간)

6. 의견제출

○ 이 규칙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경제교통과

- 전화번호 : 055)940-3683

- FAX : 055)940-3349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①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는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3항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의 판매량, 회수량 등 거창사랑상품권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 신청한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 자격요건, 등록 제한업종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록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가맹점 등록 현황(변경·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거창군

(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4조(거창사랑상품권 이용규약 및 할인제한) ①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규약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거창사랑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거창사랑상품권의 환전 청구 및 한도) ① 가맹점은 법 제9조에 따라 환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기본 환전 한도는 최대 월 5천만원으로 한다.

제6조(환전된 거창사랑상품권의 처리)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거창사랑상품권을 일자와 권면 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거창사랑상품권은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30일 내에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여 폐기 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폐기 조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7조(판매대행점에 대한 수수료 등)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판매대행점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제8조(거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세부기준) 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 1인당 할인 판매 한도는 월 100만원 또는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맹점과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9조(환수사유) 조례 제9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환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용자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법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환전되지 않은 상품권의 귀속)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는 거창사랑상품권의 판매금액은 군에 귀속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

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될 때에는 판매금액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권면액의 90퍼센트로 한다.

- 제11조(발행대장 및 회계장부)** ①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 ②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거창군과 거창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거창사랑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부터 1년으로 하고,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하에 재협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거창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5천원권, 1만원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적용범위는 거창군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 보관·반출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환전 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출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관리·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 할인율은 원칙적으로 개인은 6퍼센트, 법인과 가맹점 상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의 경우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10일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8,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7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장소는 판매대행점에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참석·확인하여 폐기한다.

제10조(상품권 위조·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거창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제12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거창군수와 상품권 판매대행점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년 월 일

상품권 발행권자

상품권 판매대행점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주소

대표자 거창군수

(서명)

대표자

(서명)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거창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거창사랑상품권 판매·환전 현황

(년 월분)

권종	인수		판매		환전		환전 잔액		재고	
	일련 번호	매수	일련 번호	매수	일련 번호	매수	일련 번호	매수	일련 번호	매수
계										
5천원권										
1만원권										

「거창군 거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사랑 상품권 판매·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직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업 종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업소 소재지			
	주 소			

「거창군 거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거창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지정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통장 사본 1부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거창군이 발행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거창사랑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창군과 가맹점 간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의 지정·변경·해지) ① 거창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가맹점 지정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시행규칙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가맹점 지정 취소) 거창군수는 가맹점이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지정이 한 번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부터 2년간, 두 번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부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거창군 또는 가맹점 어느 한 쪽이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거창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6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5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7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거창사랑상품권 소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조·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⑤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11조(성실히행 및 업무협조) ① 거창군수와 가맹점은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권 교환업무의 처리는 거창군수와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년 월 일

거창군

가맹점

상 호: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주 소:

대표자: 거창군수 (서명)

대표자: (서명)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거창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거창군 - 호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

- 상 호:
- 소 재 지:
- 성 명:
- 생년월일: (남, 여)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거창사랑상품권 이용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자인 거창군과 거창사랑상품권의 사용자가 거창사랑상품권을 운용·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거창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종류는 5천원권, 1만원권으로 한다.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거창군이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거창군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상품권의 환급) 거창군은 이미 판매된 상품권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현금으로 환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70퍼센트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사용자는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해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분실) 거창군은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거창사랑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거창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권 면 액	매수	폐기방법	비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거창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직 성 명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사랑상품권 발행대장

인수 일자	발행번호		발행매수	발행금액	보관 장소	결재		
						담당자	담당 주사	과장
	5천원권							
	1만원권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교통사고 예방 방지를 위하여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8일

거창군수

1. 행정예고 내용

- 설치목적 : 차량 운행속도 저감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
- 사업명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 설치규모 :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5대(다기능 2, 과속 3)
- 설치위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52-1 거창초등학교(군청로타리↔법원사거리)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463-11 창남초등학교(교육청사거리→청소년문화의집)
 -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549-1 남하초등학교(남하면사무소→합천방면)
 - 경남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718 주상면사무소(도평2구마을→주상면소재지)
- 주관부서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055-940-3382)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3. 공고방법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년 8월 28일 ~ 2020년 9월 18일(21일간)

5. 의견제출

○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E-mail 등

○ 제출기관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교통담당)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 전 화 : 055-940-3382

- FAX : 055-940-3349

- E-mail : eros338@korea.kr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8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제77조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안내문, 부과지서, 자동차 검사명령서,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건설기계검사지시 최고 통지,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검사유효기간 경과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1항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건설기계 직권말소, 검사안내 및 위반자 우편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20. 9. 1. ~ 2020. 9. 21.
3. 공고대상 : 47건(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3)

2020년 8월 31일

거 창 군 수

고제 탑선 자동염수분사장치 CCTV 설치 행정예고

도로의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고제 탑선 자동염수분사장치 운용 및 관리용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일

거창군수

1. 행정예고명 : 고제 탑선 자동염수분사장치 CCTV 설치
2. 시 행 청 : 경상남도 거창군청
3. 행정예고기간 : 2020. 9. 2. ~ 2020. 9. 23.(21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19. 9. 2. ~ 2020. 9. 23.(21일간)
5. 행정예고(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주요내용

- 설치목적 : 강설로 인한 교통사고 및 제설 취약구간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관리용 카메라 설치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녹화
- 설치위치

구 축 장 소	설치 대수	촬영 시간	운 영 기 관	비고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597-5 (지방도1089호선)	1	24시간	거창군 경제산업국 건설과 (도로담당)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134-3 (지방도1089호선)	1	24시간	거창군 경제산업국 건설과 (도로담당)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 팩스 : 055-940-3529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문 의 처 :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도로담당 ☎ 055-940-3557)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

2. 제정이유

거창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위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노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 권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먹거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예고기간 : 2020. 9. 1.(화) ~ 9. 21.(월)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복농촌과 지역식품담당)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3322 거창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지역식품담당

라. 전화/이메일 : 055-940-8293 / 이메일 12345k6@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지역식품담당 **【☎(055)940-829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2020-
----------	-------

제출일자	2020. 9. .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 이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군민에게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목적, 정의 등 (안 제1조~제2조)
- 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위한 군수의 책무(안 제4조)
- 다.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권리 및 먹거리 순환 노력(안 제5조)
- 라. 지역 먹거리 선순환 공급체계 마련 종합계획 수립(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1호 나목 및 제22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 의 :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9. 1. ~ 9. 21.
 - 나) 예고결과 :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분석결과반영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별,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거창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입지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군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먹거리 종합계획”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공급 및 품질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계층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군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군민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먹거리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③ 군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공급과 지역 먹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군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 건강한 먹거리의 공급과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거창푸드 산업 육성지원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먹거리 실태조사)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
2. 군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3. 먹거리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5. 그 밖에 군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거창군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 내 회사 급식담당 및 학교급식 관련자(급식지원센터, 영양교사, 조리사 등)
2. 생산자조직·소비자조직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 대표
3. 지역 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군민단체 대표
4.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5.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 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나.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